

[별표] <개정 2010.7.15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- 나.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 태 료 금 액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1호	600	800	1,000
나.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2호	400	600	1,000
다.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1호	300	400	500
라.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2호	200	300	500
마. 법 제38조에 따른 매 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·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3호	200	300	500
바.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,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4호	200	300	500
사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5호	200	300	500
아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제6호	200	300	500